

◎ 분실물을 발견하면

■ 길에서 . . .

길에서 분실물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에 신고해 주세요.

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당신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
분실물의 소유권이 당신에게 옮겨 온 뒤 2개월 이내에 그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 물건을 받을 때는 신고했을 때 교부된 습득물건 보관서를 지참하세요.

다른 사람이 당신의 대리로 그 물건을 받을 때는 당신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
만약 그 물건이 소유자에게 되돌아갔을 경우 당신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분실물을 발견한 뒤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. 또 그 물건의 소유권도 잃습니다.

■ 역구내나 점포에서 . . .

역구내나 백화점 등의 점포에서 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건물 관리자나 안내센터 등의 사무실에 신고해 주세요.

소유자가 판명되면 그 물건은 소유자에게 돌려 줍니다.

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으면 관리자는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

만약 분실물을 발견한 뒤 24시간 이내에 그 건물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. 또 그 물건의 소유권도 잃습니다.